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7. 2. 24. ~ 3. 3.)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7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3
2017 -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2017 -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8
2017 -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39
2017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4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

1. 제안이유

구)서흥여객 부지는 강남권의 교통, 주거, 상업의 요충지로서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내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버스터미널 (시외+시내) 이전으로 교환, 취득한 구)서흥여객 부지를 강북과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권 요충지로서의 개발 필요
- 군민 설명회 개최 후 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광호텔 투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필요

3. 처분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외 1필지
- 면 적: 2,435m²
- 대부 (사업)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 처분시기: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준공 후)
- 재산처분 내용

(단위: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2,435	1,278,923,700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350	대지	2,128	1,238,921,600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유치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119-2	잡종지	307	40,002,100		

4. 추진경위

- 2010. 2월: 농어촌버스 이전에 대한 MOU체결(서흥여객(주) ↔ 거창군)
- 2010.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2010.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교환취득)
- 2014.11월: 농어촌버스 터미널 이전건설 업무이행협약 체결
- 2015. 9월: 부지 교환 등기 및 서흥여객 이전 완료
- 2016. 3월: 부지내 사유지 취득 완료(김천리 119-2번지 860㎡)
- 2016. 4월: 공유재산 용도변경(도시건축과⇒재무과) 및 지장물 철거
- 2016. 5월: 현 양동인 군수 공약사업 선정(구 서흥여객 부지개발)
- 2016. 5월: 「군민 소통 한마당」 부지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 2016.11월: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7. 2월: 재산의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 분할 측량 완료

5. 향후계획

- 2017.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창군의회 심의 및 승인
- 2017. 3월: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공개모집
- 2017. 4월
 -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대부자선정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017. 5월 이후: 관광호텔 설계 및 착공
- 대부기간 만료(관광호텔 준공 후) 시: 재산 매각
- ※ 대부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7. 기대효과

-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외부 관광객 유입 증대 기대
- 공유재산의 대부료 수입으로 군 세입 증대

8. 위치도(현장사진) 지적도 ⇨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김현리 350번지의외 1필지



□ 전경사진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7. 2. 24. ~ 3. 3.)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7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3
2017 -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2017 -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8
2017 -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39
2017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4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

1. 제안이유

구)서흥여객 부지는 강남권의 교통, 주거, 상업의 요충지로서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내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버스터미널 (시외+시내) 이전으로 교환, 취득한 구)서흥여객 부지를 강북과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권 요충지로서의 개발 필요
- 군민 설명회 개최 후 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광호텔 투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필요

3. 처분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외 1필지
- 면 적: 2,435㎡
- 대부 (사업)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 처분시기: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준공 후)
- 재산처분 내용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2,435	1,278,923,700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350	대지	2,128	1,238,921,600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유치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119-2	잡종지	307	40,002,100		

4. 추진경위

- 2010. 2월: 농어촌버스 이전에 대한 MOU체결(서흥여객(주) ↔ 거창군)
- 2010.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2010.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교환취득)
- 2014.11월: 농어촌버스 터미널 이전건설 업무이행협약 체결
- 2015. 9월: 부지 교환 등기 및 서흥여객 이전 완료
- 2016. 3월: 부지내 사유지 취득 완료(김천리 119-2번지 860㎡)
- 2016. 4월: 공유재산 용도변경(도시건축과⇒재무과) 및 지장물 철거
- 2016. 5월: 현 양동인 군수 공약사업 선정(구 서흥여객 부지개발)
- 2016. 5월: 「군민 소통 한마당」 부지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 2016.11월: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7. 2월: 재산의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 분할 측량 완료

5. 향후계획

- 2017.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창군의회 심의 및 승인
- 2017. 3월: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공개모집
- 2017. 4월
 - 공유재산 대부자(투자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대부자선정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017. 5월 이후: 관광호텔 설계 및 착공
- 대부기간 만료(관광호텔 준공 후) 시: 재산 매각
- ※ 대부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7. 기대효과

-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외부 관광객 유입 증대 기대
- 공유재산의 대부료 수입으로 군 세입 증대

8. 위치도(현장사진) 지적도 ⇨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김현리 350번지의외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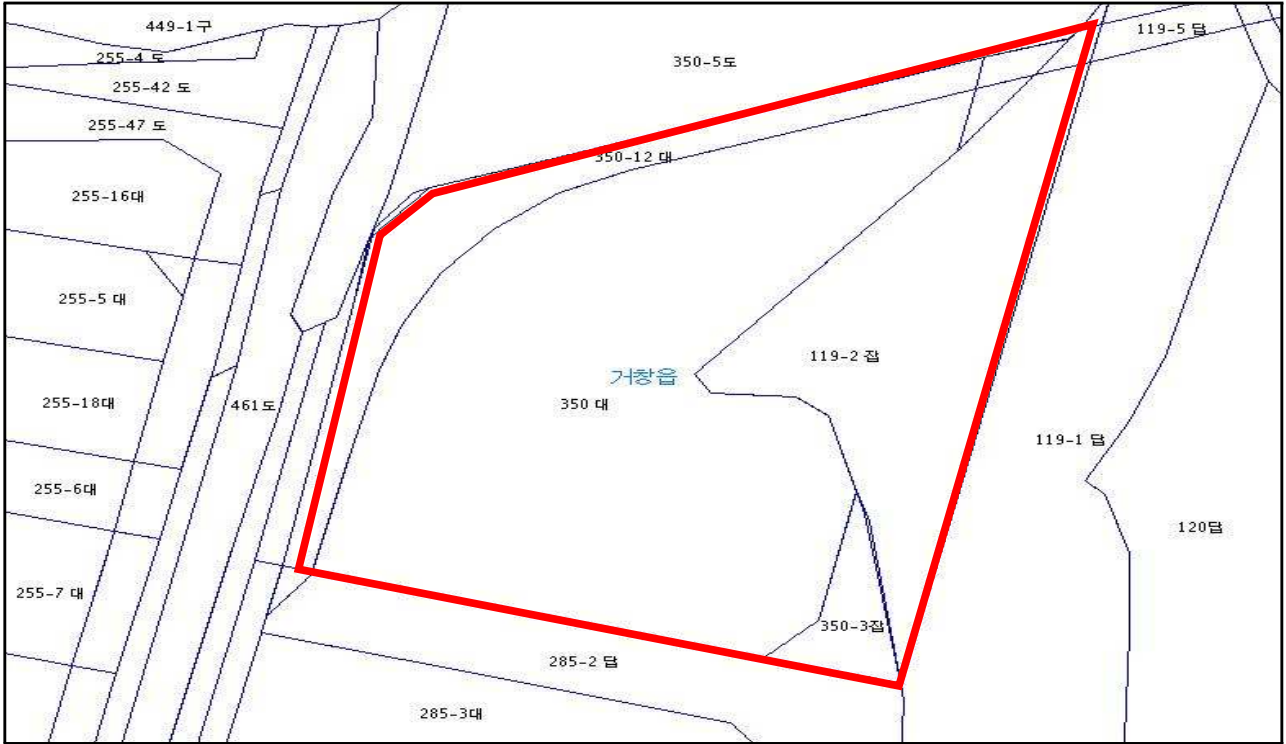


□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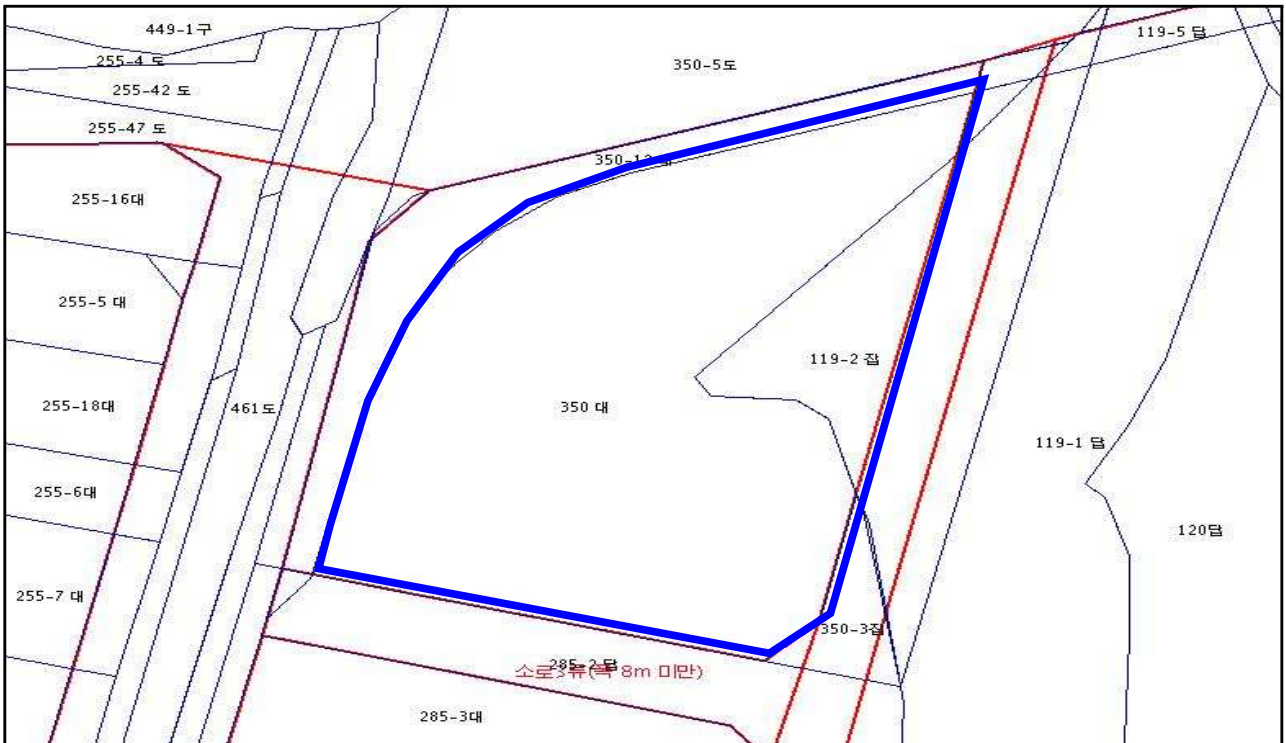


지적도(사업부지) 변경사항

■ 당초: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3필지 3,521㎡



■ 변경: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1필지 2,435㎡



2] 가조은천 관광지 활성화사업

1. 제안이유

가조은천관광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과 온천지구 입구 방치된 건물 정비로 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조은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관리사무소, 온천수 배수지가 위치한 토지는 경상남도로 환지가 되었고
- 시설물은 개인시설로 정리되어 온천수 공급 중에 시설물 소유자와 마찰 시 온천수 공급단절 우려가 예상되고,
- 관리사무소 등 불법건축물을 정리하여 관광지 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코자 함.

3. 취득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대지면적: 1,117.6㎡ (토지소유자 : 경상남도)
- 사업기간: '17. 01월 ~ '18. 12월
- 사 업 비: 350백만원<군비 350>
- 주요기능: 온천수 관리

4. 재산취득 내용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용도)	취득면적				
취득	토지	가조면 일부리 1302	잡	1,117.6	134,894,320	2017	가조은천관광지 활성화사업	경상남도

※ 기준가격은 2016년도 공시지가 기준가격임. (본 감정평가시 변동가능성 있음.)

5. 추진경위

- 2005. 05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유지 등기
- 2015. 01월: 온천공 3공 공유화 완료
- 2015. 06월: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제정

6. 향후계획

- 2017. 02월~: 경상남도 협의 및 토지 매입
- 2017. 07월~: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

7.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8. 기대효과

-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및 배수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으로 온천지구 활성화에 기여
- 시설물 재정비, 유지관리로 내방객에게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 제공

9.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전경사진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7.1.13.] 제26조제5항, 제26조제6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2016.7.12.>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40점)	일자리창출 기여도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	A : 200명 이상 : 20 B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15 C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 D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 E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해당지역 원자재 조달계획	A : 70% 이상 : 20 B : 60% 이상 : 15 C : 50% 이상 : 10 D : 40% 이상 : 5 E : 30% 이상 : 2	20
정성적 평가 (60점)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수행능력, 실적, 신인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평가함			60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10>에 따른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2.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0]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제1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2) 관광·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3. 세부기준

가. 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공무원(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및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5)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의 참석여부를 우선으로 즉시 확인하여 불참 확인 시 해당 입찰참가자가 다시 추첨하게 하도록 하여 선정한다.
- 6)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등)을 5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7)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의 평가는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2)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능력평가 (70)	정량평가 (4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A: AAA~BBB- 에 준하는 등급 : 10 B: BB+, BBO 에 준하는 등급 : 9 C: BB- 에 준하는 등급 : 8 D: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7 E: CCC+ 에 준하는 등급 : 6	10
		사업운영기간	해당 지역 (시도)에서의 관련 사업 운영 기간 A: 36개월 이상 : 10 B: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8 C: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6 D: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 E: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	10
		납세실적	법인소득세 연평균 납부실적 A: 5억원 이상 : 10 B: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 C: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6 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 E: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	10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 현재 고용 중인 상시종업원 수 A: 200명 이상 : 10 B: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8 C: 50명 이상 100명 미만 : 6 D: 30명 이상 50명 미만 : 4 E: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10
정성평가 (30)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신인도, 수행능력,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성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30
가격평가(3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해당입찰가격}}{\text{최고입찰가격}}$			30

- 3)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7:3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6:4 또는 8:2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가격평가와 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정량평가의 재무상태 평가 방법은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6) 정량평가의 사업운영 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입찰 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 7) 정성적 평가는 선정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8)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낙찰자 결정

- 1) 제안서 평가 결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점수의 합계가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2)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3)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결정한다.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해제 특구 신청 (개요)

- 명 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 사업기간: 2007년 ~ 2016년 (종료)
- 위 치: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의 외 116필지
- 면 적: 585,926㎡ (채석 409,155㎡/가공 176,771㎡)
- 지 정 일: 2007년 10월 10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3호)
- 지정기간: 2007 ~ 2016년 (총9년)
 - 2007 ~ 2010년 (당초) ⇒ 2011 ~ 2013년 (1차 연장) ⇒ 2014~2016년 (2차 연장)

○ 규 모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위천면 남산리 105-2 외 116필지	585,926㎡	
가공지구	위천면 남산리 105-1 외 29 필지 위천면 남산리 123-3 외 74 필지	176,771㎡	■ 지정승인(경남도)94.12.25 -남산농공단지
채석지구	위천면 모동리 산 6-1 외 8필지 위천면 모동리 산 127-1 외 2필지	409,155㎡	■ 산림청 고시 제2007-90호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 모동기업사,(주)형제석채

○ 규제특례 적용사항

특구법	규제 특례적용 대상
제22조	도로교통법 (교통제한 요청, 즉시 조치)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설치 허용)
제36조의 8	특허법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허용)

○ 그간 검토사항

구 분	가 공 업 체 요 구 사 항	거 창 군 검 토 사 항	비 고
2013년 12월	특구중 가공단지 제외 요구	가공단지 제외는 특구지정 해제 사항	
2016년 5월	특화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요구	특화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여도 특구와는 무관함	
2016년 6월	산업특구 기간연장 및 일반산업단지로 의 전환	특구지정을 통한 실질적 혜택과 규제 특례의 활용성 없음 거창화광석산업특구 해제	
2016년 9월 7일 (간담회)	- 화강석 산업단지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어 타산업이 진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화강석 특구를 연장하지 않고 특구 해지 절차 진행		간담회 개최
2017년 1월19일 (공청회)	- 거창화강석 주민공청회를 통한 해지계획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해제사유

- '16년 12월말 특구기간 종료 및 그간 2회 연장, 목적달성,
규제특례 활용 큰영향 없음
- 지난 10년 동안 화강석 특구로 지정되어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남산석재가공산업단지 신규산업 진출 확대

2.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개요)

- 행 사 명: 거창화강석 특구 지정해지 공청회 개최
- 일 시: 2017. 1. 19.(목) 14:00~15:00
- 장 소: 위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30명 (거창화강석 관계자 및 주민)
- 주요내용: 특구기간만료 및 향후 해지절차를 위한 주민공청회
- 법적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및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의 규정

○ 공청회 결과

- 거창화강석 관계자 및 주민들은 특구해지에 관하여 공감대 형성 (특구기간만료 및 신규산업특구 진입필요성)
- 거창화강석 특구지정해지 계획 관계업체 및 주민 반대의견 없음

3. 향후 추진계획

- '17. 2.24~3.2: 군의회 의견청취
- '17. 3월: 중기청 지정 해제 신청
- '17. 3~4월: 중기청 안전상정 및 승인

4. 참고사항

- 주민 공청회 개최 사진 (붙임 1 참조)
- 관련법 (붙임 2 참조)

□ 공청회 개최 사진



위 치	위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사 진 설 명	공청회 현장
-----	-------------------	---------	--------



위 치	위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사 진 설 명	공청회 현장
-----	-------------------	---------	--------

관 련 법 규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기업청장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

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거창사과전망대 내에 신설되는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우리군의 우수하고 청정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따라 능력을 갖춘 거창군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 나. 위 치: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광주방향)
(가조면 도리 산189-1번지)
-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거창사과전망대 1층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64.73㎡	- 판매대 1식, 진열장 1식 - 쇼케이스 2대 - 저장창고 1식(냉장고, 진열대) - 냉난방공조시설 1식 - POS 시스템 1식	

라. 위탁대상 사무

- 농특산물판매장 시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시설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재산평정 가격의 5%를 위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창군에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7. 3. 6. ~ (7일간)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2017. 3. 10. 까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2017. 3. 15.
- 위탁운영 시설점검: 2017. 3월말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4월초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I 위탁법적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II 위탁시설현황

- 시설위치 : 광주-대구고속도로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 광주방향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189-1 일원)
-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사과전망대 1층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64.73㎡	- 판매대 1식, 진열장 1식, 쇼케이스 2대 - 저장창고 1식(냉장고, 진열대) - 냉난방 공조시설 1식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협약일로부터 3년간 (재계약 가능)
- 위탁대상 업무
 -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거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시설 유지
- 수탁기관 모집: 공개모집
 - 공 고: 거창군 홈페이지 및 관내 일간지
- 위탁운영 신청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

○ 위탁운영 조건

- 시설목적에 맞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
- 위탁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시설의 개·보수비 중 우리군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비용 지원
- 수탁관리자는 우리군에서 심사한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함
- 수탁관리자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수해야함
-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우리군이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해야함

○ 선정기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 설립 목적의 타당성, 농특산물판매장 산업육성 체계, 경영의 자립성, 차량 및 장비 등 검토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IV 그간 추진현황

- 2014. 12. ~ 2016. 12.: 사과전망대설치공사 / 문화관광과
- 2015. 3.: 농특산물 판매점 이전동의 / 거창군&도로공사
- 2015. 5. ~: 사과모형 설치공사 / 문화관광과
- 2015. 5.: 농특산물 판매장 철거
- 2016. 11.: 거창사과전망대 농특산물판매장 공사 착공

V 향후 추진계획

- 2017. 1.: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군의회 승인 요청
- 2017. 2.: 민간위탁 공고 및 공모 접수(7일간)

- 2017.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
- 2017. 3.: 민간위탁심의회 개최 및 수탁단체 선정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실시
- 2017. 3.: 거창사과전망대 농특산물판매장 공사 준공
- 2017. 4.: 위탁운영 실시

관 련 법 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2016.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014.10.0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14.10.0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항신설 2014.10.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항이동 2014.10.0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14.10.01)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항신설2014.10.01. 2016.12.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

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거창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 거창푸드종합센터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다. 규 모

- 거창푸드종합센터: 712.5m² (지상 2층)
- 거창푸드종합센터 내 전시판매대 등 장비 13종
- 거창푸드종합센터 내 소분실 장비 26종
- 거창푸드종합센터 내 도정기 4종
- 냉장탑차 등 차량 3대

라. 위탁업무 범위

- 거창푸드종합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 농산물 순회수집 및 배송사업
- 소량생산 농산물 꾸러미 판매
- 잡곡 도정시설 운영
- 인터넷 쇼핑몰(거창몰) 운영

마.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05. 22.: 거창푸드산업 육성 지원조례 및 규칙 제정
- 2013. 07. 24.: 비영리단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3. 11. 0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 농림축산식품부
- 2013. 11. 0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 농림축산식품부

- 2013. 12. 01.: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 2013. 12. 24.: 거창푸드종합센터 건립 · 위탁 운영
- 2014. 01. 13.: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구축 · 운영
- 2014. 03. 18.: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유통전문판매업
- 2014. 09. 26.: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업무제휴 협약체결
- 2015. 04. 30.: 정부 3.0 박람회 참석
- 2015. 06. 26.: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바. 운영계획

- 위 탁 단 체 :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제열)
- 위 탁 기 간: 2016. 12. 24. ~ 2019. 12. 23.(3년간)
· 1회 위탁 기간: 2013. 12. 24 ~ 2016. 12. 23
- 인 력 현 황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업무담당 4명
- 위 탁 내 용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운영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나. 향후일정

- 위탁 운영: 2016. 12. 24 ~ 2019. 12. 23 (3년간)

다. 소요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6년	2017년	비 고
민간위탁금(307-05)	250,000	250,000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라.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운영 계획

우리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함

1. 법적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9조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운영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2. 시설현황

- 시설 명: 거창푸드종합센터
- 위치: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규모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저장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전시 135, 저온 13, 채소쿨링 13, 작업 15)	107.8㎡ (53.9×2)	162.2㎡ (선별 102.2, 창고 12, 소분·포장 48)	82.5㎡	180㎡ (사 582, 사 29.1×2, 기타 63.6)

3. 그간의 추진사항

- 2013. 05. 22.: 거창푸드산업 육성 지원조례 및 규칙 제정
- 2013. 07. 24.: 비영리단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3. 11. 0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 농림축산식품부
- 2013. 12. 01.: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 2013. 12. 24.: 거창푸드종합센터 건립 · 위탁 운영
- 2014. 01. 13.: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구축 · 운영
- 2014. 03. 18.: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유통전문판매업
- 2014. 09. 26.: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업무제휴 협약체결

- 2015. 04. 30.: 정부 3.0 박람회 참석
- 2015. 06. 26.: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 위탁추진 계획

□ 재위탁 운영

- 수탁업체: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제열)
- 수탁업무: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관리
- 수탁기간: 2016. 12. 24. ~ 2019. 12. 23. (3년간)

□ 위탁범위

- 거창푸드종합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 농산물 순회수집 및 배송사업
- 소량생산 농산물 꾸러미 판매
- 잡곡 도정시설 운영
- 인터넷 쇼핑몰(거창몰) 운영

□ 선정(재위탁)기준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협약체결 등)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 (2016. 10. 31)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평가 실시(농촌활력과)
- (2017. 01. 20) : 위탁기간 갱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재무과)

□ 향후 추진일정

- 위탁기간 연장협약 체결: 2016. 12월말.
- 위탁 운영: 2017. 12. 24. ~ 2019. 12. 23.

5. 소요예산

- 2017년 위탁사업 운영비 250,000천원

6. 기대효과

- 우리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 로컬푸드의 지역소비를 통한 농촌 환경 보존 및 식량주권 확보

관 련 법 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 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29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5.12.23.)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 2017. 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보고사항

-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4. 향후 추진계획

- 경상남도 보고: 2월 중
- 2017년 시행계획 철저 이행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15.11.19)

구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총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연차별 시행결과	비 고
수립 주체	시·도 및 시·군·구		법제7 조
수립 시기	4년마다	매 년	①②항
수립 내용	<p>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p>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 보건의료계획"이라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1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법 제7조 ①항 령 제4조

구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총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연차별 시행결과	비 고
수립 주체	시·도 및 시·군·구		법제7 조 ①②항
수립 시기	4년마다	매 년	
	<p>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p> <p>13.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p> <p>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1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13.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